

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7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7. 4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7. 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7. 1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복지지원과장 천미옥)

가. 개정이유

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 보다 많은 군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용 기간 및 연장 기준을 정비하고,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이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. 아울러, 공설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, 계약(이용) 기간 종료 이후 유골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정의 등 관련 용어 정비(안 제2조~ 제5조, 안 제7조~ 제11조, 안 제13조·제14조·제16조)

- “ 화장장 ” → “ 공설 화장 시설 ” , “ 봉안당 · 봉안묘 ” → “ 공설 봉안 시설 ”

2)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6조)

가) 무연분묘 및 무연유골,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안치 기간 삭제

나) 사용기간의 연장과 횟수에 관한 사항

3) 사용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 구체화(안 제10조)

4)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의2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검토결과: 의견없음[복지지원과-19095호(2025.05.19.)]
- 4) 기 타
 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930호
 - 예고기간: 2025. 5. 20. ~ 2025. 6. 09.(20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.
 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라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붙임
 - 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제출 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공설장사시설 사용기한 등에 관한 법령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간의 표현와 용어를 통일하고,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(안 제1조~제5조, 안 제7조~제11조, 안 제13조, 안 제14조, 안 제16조) 와 별표 1, 2에 걸쳐 정의 등 관련 용어를 ‘화장장’ → ‘공설화장시설’, ‘봉안당·봉안묘’ → ‘공설봉안시설’로 정비하여 법률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였음.

- (안 제6조) 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연 분묘 및 유골 15년, 무연분묘 및 유골 10년, 무연고 시신 등 5년의 구분된 사용기간을 삭제하고,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에 연장은 15년씩 세 차례, 공설봉안시설은 최초 15년에 연장은 15년 한차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였음.
- (안 제10조) 사용권이 소멸된 유골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권 소멸 후 1년 이내 신고 또는 유골 인도가 없는 경우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한 용어의 정비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구분 정비하고 사용권의 소멸과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에 관한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7. 1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